

#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25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계획’ 추진에 따라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경력을 지닌 현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 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6조제2호)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4. 23. ~ 5. 14. (21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나) 경 기 도 : 체육진흥과

##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체육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체육과장 김상영
	팀장 직위·성명	체육정책팀장 권두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한재훈(☎259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략)</p> <p>&lt;신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2. · 3. (생략)</p> <p>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p> <p>1. (생략)</p> <p>&lt;신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p> <p style="padding-left: 20px;">2.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신청) ----- ----- ----- -----.</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p> <p style="padding-left: 20px;">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법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 나.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9. “체육대회”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말한다.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김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 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  
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붙임 3

## 참고자료 (관련 공문)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체육인 기획소득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안내

1. 도 체육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도에서는 2025년 체육인 기획소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2025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인 기획소득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는 상반기 중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2025년 사업설명회 참석 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인 기획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2025년 체육인 기획소득 확대계획 1부. 끝.

경 기 도



수신자 시·군 체육부서

주무관	류민호	체육진흥담당	대결 2025. 3. 21. 순령식	체육진흥과장	전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4681	(2025. 3. 21.)		접수	체육과-3099 (2025. 3. 21.)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리동, 경기도청)			/ <a href="http://www.gg.go.kr/">http://www.gg.go.kr/</a>
전화번호	031-8008-4636	팩스번호	031-8008-4269	/ <a href="mailto:yulinho@gg.go.kr">yulinho@gg.go.kr</a>	/ 비공개

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됩니다